

**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**

**이에 공포한다.**

**대 통 령 이 명 박** 인

**2009년 10월 21일**

**국 무 총 리 정 운 찬**

**국 무 위 원 이 귀 남**  
**법무부장관**

**●법률 제9804호**

**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**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80조제7항 본문 중 “공익채권은”을 “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의 차입,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, 자재의 구입,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*◇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**

종전에는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.

**◇주요내용**

가.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금의 차입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의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(법 제179조제2항 신설).

나.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(법 제180조제7항)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09년 10월 21일

국무총리 정운찬

국무위원  
법무부장관 이귀남

●법률 제9805호

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개방형 축사”란 소(牛)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(通氣性)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

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.

제3조(등기 요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.

1.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
2.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
3.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
4.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
5.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

제4조(부동산등기)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「부동산등기법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.

제5조(대법원규칙)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

및 주요내용

축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(牛)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됨